

공산품 안전 관련 규제

벌칙, 과태료의 법적 근거 및 부과 현황



허 경 옥 교수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대부분의 법규와 마찬가지로 공산품 안전을 피하기 위해 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서도 법규에 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공산품 안전 관련 법규의 벌칙에 대한 자세한 논의 이전에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벌금은 형벌로서 징역 대신 과하는 형벌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과태료는 주로 시, 군, 구청 등의 기관에서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한편,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성격의 행정제재금이다. 징역이나 벌금, 과징금 등이 한 번으로 끝이 나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끝까지 시정을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둔 것이다. 한편, 공산품안전 관련 법규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 벌칙은 과징금이다. 과징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한다. 벌금도 넓게는 과징금에 해당한다.

이들 네 종류 벌칙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벌금은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로 금고보다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하다. 벌금액은 5만원 이상이며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둘째, 과징금은 행정청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셋째,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 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공산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표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등 관련법상 확인을 필요로 안전인증마크를 표시해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지방자치단체 등은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거나 안전인증마크 표시를 미부착한 제품을 적발하면 개선, 수거 또는 파기명령, 과태료,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한편,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인증검사에 합격받은 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표 1. 제품안전인증제도

구분	공산품				전기용품
	안전인증	자율안전인증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인증
기준	안전인증	자율안전인증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인증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제품안전과 관련한 규정으로써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결함행위 관련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표2>와 같다.

표 2. 소비자기본법의 결함행위와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사망을 발생시킨 결함	3천만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발생시킨 결함 · 2명 이상의 식중독을 발생시킨 결함	2천만원
· 물 품등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1천만원

한편, 사업자가 중대한 결함 내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 이는 리콜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리콜명령규정 등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가 제품문제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특히 리콜 관련 정보나 자료제출 등에서의 불응시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표 3. 리콜 관련 벌칙 규정

구 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리콜명령 불응 등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결함정보보고 불응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품사고자료제출 불응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리콜관련 정보/자료 불응 등: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외에도 제품안전 관련 벌칙 규정을 더 살펴보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월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다쳤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뉴시스와이어, 2014년 2월 13일).

한편, 우리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화장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품질 표시대상이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화장지 관련 상품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판매는 물론 진열도 불가능하다. 화장지를 판매하려면 품명, 치수(지폭X길이, 겹수),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국가통합인증 KC마크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조 및 판매원의 단순 미표시는 개선 명령 및 판매중지, 허위 표시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화장지에서 법규에서 정한 표시가 없는 제품도 있어 판매자 상당수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샘플링 조사, 제보 등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을 감시하고 있으며 의무 표기내용을 누락한 업체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컨슈머타임즈, 2013년 12월 24일).

지금까지 제품안전 관련 벌칙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결함제품, 제품안전, 리콜 관련 처벌 수준인 과태료 액수가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소비자권의 옹호론자 들은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벌칙 조항을 강화해 자율과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태료가 상향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최대한 제품 결함을 숨기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제조사가 소비자안전에 소홀할 경우 엄격한 징계를 하고 있다. 미국 공산품의 안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정부 독립기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제조사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당 최소 10만달러(약 1억여원), 최대 1,500만달러(약 16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품안전 위반행동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있다. 불법·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 2014년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과징금제도 도입이 살펴볼 만하다(inews24, 2014년 5월 8일). 이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법률 개정으로 정량표시 상품을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 질량(쌀, 과자류 등), 부피(음료수, 주류 등)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표시 상품으로 관리했으나 물티슈, 기저귀, 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표시된 양과 실제 양이 다르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커피믹스, 기저귀 등 개수로 표시되는 물건도 정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다른 예로써 계량기(주유기)를 조작해 주유 양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 벌금이나 영업정지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2014년 강화된 벌칙 이전에는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봉인을 훼손하거나 계량을 속이기 위해 가짜로 계량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주유기 불법 조작에 대한 벌금이 이익보다 크지 않고, 소프트웨어 조작 등 지능화 양상도 보여 범죄 근절이 쉽지 않으므로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 계량기 조작시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처벌도 강화해 조작계량기를 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 벌금, 등록하지 않은 채 계량기 제조·수리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머니투데이, 2014년 4월 18일).

또 다른 벌칙의 강화 사례로써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량 어린이완구와 유·아동복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단속 횟수를 최대 4배 늘리고 반복적으로 불량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추적해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기 시작하였다(한국경제신문, 2015년 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은 분기별로 단속해 불량 사업자의 이력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불량제품을 내놓으면 가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10대 품목 가운데 어린이·노약자 용품은 지난해보다 안정성 조사 건수를 늘리고 있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불량제품으로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등 행정처분도 강화되고 있다. 2015년부터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바로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15년 2월 12일). 과거에는 유해물질 검출이 기준치를 소폭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 리콜을 권고했었다.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도 높인다고 한다. 올해 관세청과 협의해 단속 세관을 1개에서 4개로 늘리고 7,200여개의 제품을 조사해 통관단계에서 불량품을 걸러내기로 한다는 것이다(뉴시스, 2015년 2월 25일). 리콜조치한 제품의 상세정보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불량 또는 리콜조치를 받은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